

인터넷 청약안내문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안내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 1순위 체크리스트

구분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세대주 요건	▶ 성년자 누구나 청약가능! (만 19세 이상)
무주택 요건	▶ 다주택자 청약가능!
재당첨 제한	▶ 제한 없음!
거주 요건	▶ 부울경 전 지역 거주자 청약가능!(경쟁 발생 시 거제시 거주자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전매 제한	▶ 전매제한 기간없이 언제든지 전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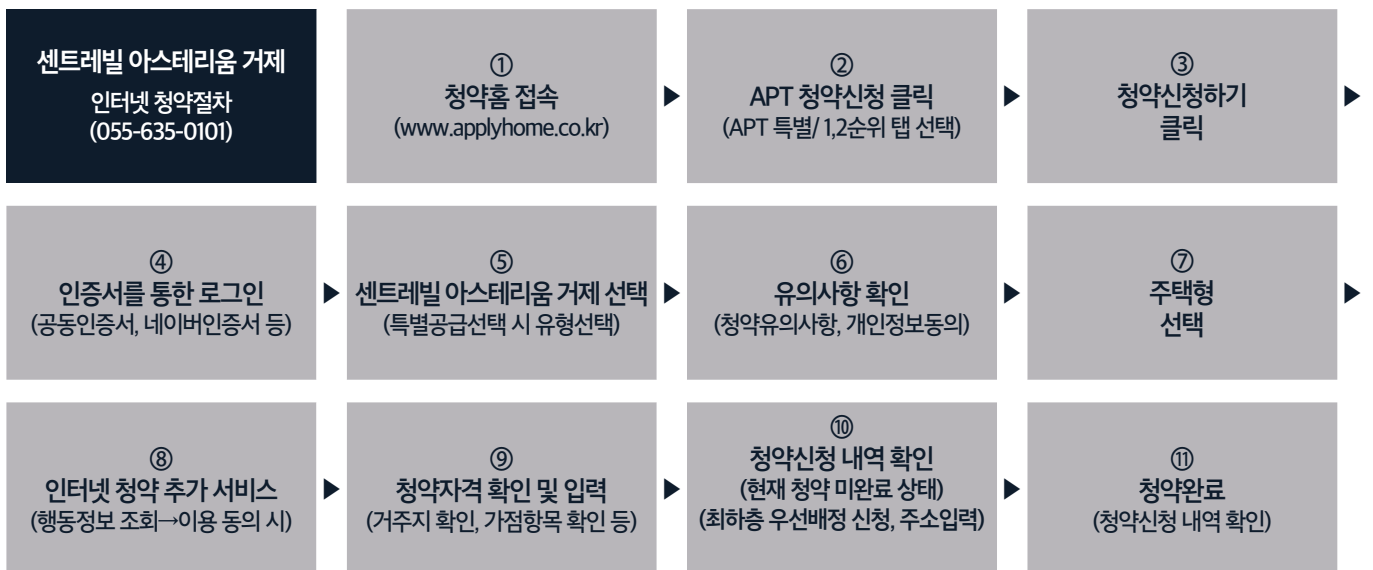
단,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 청약 종합저축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에 해당할 경우 청약가능. 청약 저축은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금으로 전환 시에만 가능합니다.

※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거제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거제시 거주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일정 및 요건

구분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일정	2026.08.03(월)	2026.08.04(화)	2026.08.05(수)	2026.08.11(화)
방법	인터넷청약(09: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로그인 후 조회 가능)
지역별 청약 예치금	면적(전용)	거제시 및 경상남도	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84m ² / 84m ² B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99m ²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청약안내문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 rowspan="3">지역별 청약 예치금</th><th>면적(전용)</th><th>거제시 및 경상남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tr><tr><td>84㎡A / 84㎡B</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99㎡</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지역별 청약 예치금	면적(전용)	거제시 및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84㎡A / 84㎡B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99㎡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지역별 청약 예치금	면적(전용)	거제시 및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84㎡A / 84㎡B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99㎡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거제시)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40%</td><td>60%</td></tr><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동장 미가입	0	1년 이상~2년 미만	2	- 배우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배우자 당첨사실 확인서	
			1년 미만	1	2년 이상~3년 미만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본 안내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 등을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ENTREVILLE

ASTERIUM

GEOJE

청약안내문

■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구분	가점제	추첨제
85㎡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일반공급 세대수의 60%를 추첨을 통해 선정

※ 예비당첨자 선정 시 가점제 점수 순으로 순번을 정하오니 가점제 점수 산정에 유의바랍니다.

※ 추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될 경우 당첨자라 하더라도 계약불가합니다.

■ 청약가점제유의사항

구분	가점제	비고
무주택 기간 [총점 32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가. 주택 공급 신청자 나.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 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 자녀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주택 공급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청약신청 연령 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 기준으로 선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0”점 입니다.	▶ Tip 무주택기간산정은 “만” 나이로 계산해야 됩니다. ▶ 실수사례 예)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5년 07월 10일 기준 1995년 07월 10일생의 경우 * 입력내용 한국 나이로는 31세로 무주택 기간을 “1년 이상(4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 실제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을 “1년 미만(2점)”으로 입력(O)
부양 가족수 [총점 35점]	■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로서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됩니다. ■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 주택 공급 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부양가족 산정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일 경우) 부 모 장인 장모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일 경우) 형제자매 동거인X 본인 (세대주) 배우자 자녀(기혼)X 자녀(미혼) 자녀의 배우자 X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인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초본에 등재된 경우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 (단, 청약자 동일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Tip 부양가족 산정 시 “청약자 본인”은 제외됩니다. ▶ 실수사례 예) A씨의사례 • 입력내용 A씨는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10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청약자본인은 부양가족수는 제외 “0명”(5점)으로 입력(O) ▶ 유의사항 - 부양가족수는 본인은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관 한규칙」에 의거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점 17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 가점 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특별공급 공동자격요건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 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횟수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 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각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 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가능 - 특별공급횟수 제한의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 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 특례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 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 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 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기존 주택 처분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2025.06.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조항	신청유형	내용	
『국토교통부보도자료』 무순위 청약, 무주택 거주자 공급 2025.02.1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서류제출 추가 요구)	가점제, 노부모 부양	- 부양가족수 가점 시 위장전입 방지 -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 약국 등) 추가 확인 -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 및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1년간)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시행일 25.06.10
『국토교통부보도자료』 무순위 청약, 무주택 거주자 공급 2025.02.11 (무주택 한정+거주자 공급)	무순위 청약, 무주택, 거주자 공급	- 신청자격 1) 무주택자한정(무조건) 2) 거주지역요건(지자체 재량 시장 상황 고려 탄력적으로 부과)	

특별공급 공동자격요건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면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 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 공급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조항</th><th>내용</th></tr><tr><td colspan="2">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조항		내용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조항		내용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어 후당첨 무효 처리 시,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계좌부활신청서 작성 세대에 한해 무효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전용면적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예치금액] <table><tr><th>구분</th><th>거제시 및 경상남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 (84㎡A / 84㎡B)</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 (99㎡)</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구분	거제시 및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84㎡A / 84㎡B)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99㎡)	300만원	600만원
구분	거제시 및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84㎡A / 84㎡B)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99㎡)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구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 기관	국가보훈부 경남동부 보훈지청 복지증진국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경상남도청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요건 사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

■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정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① 거제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이상 (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① 거주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 수 ▶ ④ 청약자 연령 ▶ ⑤ 추첨]

① 거주지역

해당지역(거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공급합니다.

②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

③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④ 자녀수가 같을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⑤ 추첨

CENTREVILLE

ASTERIUM

GEOJE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준	점수	
미성년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 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 거주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거주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거주 순위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① 거제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④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 기준 (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며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합니다.
- 2025.03.3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② 순위 ▶ ③ 거주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	
① 소득기준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거제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③ 거주지역 : 해당지역(거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공급합니다.			
④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수가 많은 자			
⑤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월평균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 49조에 따라 관할시·구·읍·면의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① 거제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
-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①거주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 거주지역
해당지역(거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공급합니다.
- ② 가점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 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④ 추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무주택 여부 • 세대원 전원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표본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하여 아래 내용 확인 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②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 18세 이상~만 30세 미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② 만 30세 이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배우자 • 포함됨.(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부양가족 아님. 직계비속 • 미혼자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 자녀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1년 이상 등재 ※ 배우자 분리세대에 속한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① 거제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④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미혼인 자녀 : 태아 입양자녀,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는 추첨제로만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 불가)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 ⑥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
- 2025.03.3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 및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 처분완료하여야 함)
- 기타 본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② 거주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기준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 거주지역 : 해당지역(거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공급합니다.

③ 추첨

CENTREVILLE

ASTERIUM

GEOJE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 49조에 따라 관할시·구 읍·면의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① 거제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분
- ④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2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2025.03.3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① 소득구분 ▶ ② 거주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기준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 거주지역 : 해당지역(거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공급합니다.

③ 추첨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신생아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인당 평균소득(579,278) × (N - 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 49조에 따라 관할시·군·읍·면의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